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 개 요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 **(정의)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

- **(적용대상)**「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

- **(목적 및 효과)** 근로노동자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적정 운송료를 정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로·과적·과속 운행 감소** 유도 및 **교통안전 확보**

- **(운임비 결정방법)** 안전운임은 민간위원, 화주, 운수사, 차주 대표로 구성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해 **매년** 결정

  * 총 13인의 위원(공익위원 4인, 화주·운수사·차주 대표 각3인)으로 구성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26. 1.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호)

- **(유사개념)** 표준운임제(~'25 / 일몰), 안전운송원가(철강·일반화물)

  * 안전운임제와 목적은 같으나 화물운임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이 높고, 가이드라인 성격의 제도로 화주 처벌조항 등 법적강제력이 없음

< 안전운임제 시행연혁 >

2018.4	⇒	2020.1	⇒	2022.12.	⇒	2025.8	⇒	2026.1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시행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1차)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종료(일몰)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차 시행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2차) (~28.12.31.)

2 안전운임제 구성과 지급기준

□ 안전운임의 결정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 **(근거)**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설치)
- **(구성)** 총 위원 13인(공익 4, 화주·운수사·차주 대표 각 3인)
- **(기능)**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결정 및 조정 등(부대조항 포함)

○ 결정절차 : 화물운송원가 조사(한국교통연구원 위탁) → 안전운임 위원회 심의·의결 → 익년 안전운임·운임원가 공표(매년 10.31.까지 고시)

□ 안전운임의 구성

○ 안전운임의 구분

-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
-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
- **(운수사업자 간 운임)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위탁**하는 경우 지급하는 운임

< 운임 지급 구조 >



○ 운임의 구성방식

차주 화물운송 : 위탁운임

위탁운임 = 차주원가 + 차주소득

1. 차주원가 = 변동원가 + 고정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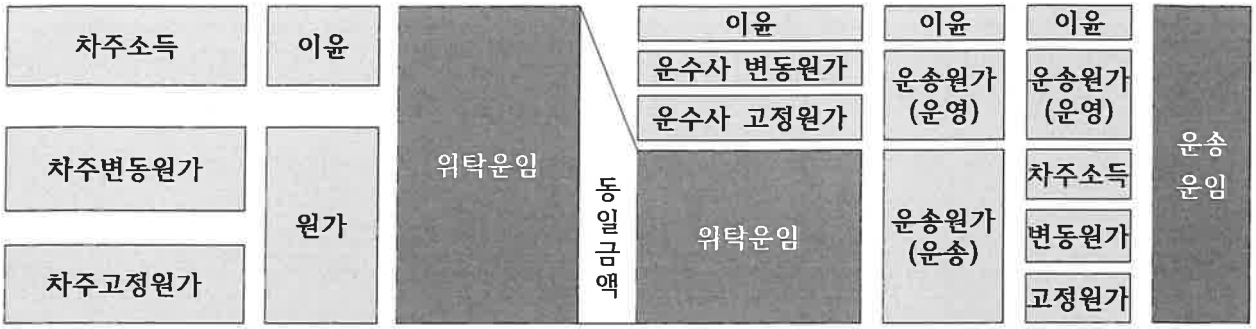
2. 차주소득 = 위탁운임 - 차주원가
※ 차주소득 = 위탁운송을 통한 차주 순소득

운수사 화물운송 : 운송운임

운송운임 = 운수사 원가 + 운수사 이윤

1. 운수사원가 = 변동원가 + 고정원가 + 위탁운임

2. 운수사이윤 = 운송운임 - 운송원가
※ 운송원가 = 운영원가(사무실 운영비용 등)
+ 위탁운임(차주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임 비용)



□ 안전운임 지급 적용기준

○ 운임적용 원칙

- **(운임지급원칙)** 당월 운송분 운임은 익월 말일 이내 현금 지급 원칙*, 두개 품목 왕복운임 기본 적용이나 컨테이너 예외사항** 있음

* 부득이한 경우 당월 마감일 후 45일 이내 지급 가능

** 수도권 화주공장에서 작업 및 공컨테이너 반납 또는 수령처가 의왕ICD인 경우

- **(거리측정방식)**

가. 시멘트 : 실제 운송거리 기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나. 컨테이너 : 기종점 구간거리* + 터미널 내 운송거리

* 대표 터미널 ~ 종점 위치 읍면동 주민센터의 거리

- **(할증적용방식)** 사전에 예측 가능한 할증 운임의 경우 운임에 포함,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경우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운임 할증 적용

* 품목 간 할증률 가산이 다르므로, 부대조항 참고 필요

- **(부가가치세)** 고시된 운임표 운임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 이외 각 품목의 자세한 운임 적용원칙은 『국토교통부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참조(국토교통부고시 제 2026-55호)

○ 적용대상품목

-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

구분	적용운임	단위	구간거리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 간 운임	40FT(12m), 20FT(6m)	편도 1km~ 왕복 1,100km
시멘트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26톤(BCT), 1톤	편도 1km~ 왕복 900km

< '26년 적용 안전운임표 >

- 시멘트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 기준	1톤 기준	26톤 기준	1톤 기준
1	2	85,600	3,300	93,200	3,600
2	4	85,600	3,300	93,200	3,600
3	6	85,600	3,300	93,200	3,600
			...		
448	896	951,500	36,600	1,036,500	39,900
449	898	952,800	36,700	1,038,000	40,000
450	900	954,100	36,700	1,039,400	40,000

- 컨테이너

구간 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안전위탁운임 (원)	운수사업자 간 운임(원)	안전운송운임 (원)	안전위탁운임 (원)	운수사업자 간 운임(원)	안전운송운임 (원)
1	2	125,300	135,500	146,500	108,500	117,600	127,400
2	4	128,300	138,500	149,500	111,000	120,100	129,900
3	6	131,700	142,000	153,200	113,600	122,800	132,800
				...			
548	1096	1,274,700	1,347,500	1,423,200	1,110,100	1,174,000	1,240,500
549	1098	1,276,600	1,349,400	1,425,100	1,111,600	1,175,500	1,242,000
550	1100	1,278,300	1,351,100	1,426,800	1,113,100	1,177,000	1,243,500

3 안전운임제 위반에 따른 벌칙

□ 안전운임제 관련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조의12)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한다.
- 위와 같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의무사항**과 위반에 따른 **벌칙**을 아래의 표와 같이 관련 법령으로 지정하였음

위반유형	법적근거	벌칙규정	비고
안전운송운임 미만 지급	화물자동차법 제70조제1항	건당 과태료 500만원	화주 부과
안전위탁운임 미만 지급	화물자동차법 제70조제1항	건당 과태료 500만원	운수사업자 부과
운임지급 관련 부정금품 수수	화물자동차법 제67조제1의3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부과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 (개 요) 화물차 안전운임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적발 및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 및 운영 중인 신고센터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14

- (주요업무)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및 위반사실 확인 후 **관할관청 통보**
- (신고방법) 안전운임신고센터 **인터넷 접수**(www.safetruck.go.kr) **및 전화 신고(1577-0990)**

< 과태료 부과 흐름 >

위반사실 발생	⇒	신고접수	⇒	사실확인	⇒	관할관청 통보	⇒	과태료 부과
		안전운임 신고센터		안전운임 신고센터		센터 → 지자체		관할관청

참고 1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보도자료('26.1.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 물류 안전장치 마련

-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26.1월 중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26년 1월 7일(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위원회***(위원장 하헌구)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되어 온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는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22년 12월 31일 일몰**되었으나,

-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가 **재도입**('25.8.14,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되었다.

○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하여 **3년간**('26~'28년)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 `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

구 분	내 용
운임종류	- 안전운송운임 : 화주(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 - 안전위탁운임 :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
도입품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위반시 처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시 과태료 500만원

□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25년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26년 적용 안전운임**을 **마련**하였다.

□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6년 적용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임 수준**) '22년 안전운임제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 **시멘트 품목** 역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 운임 산정 시 적용된 유가를 현재 유가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비교

○ (**부대조항 보완**)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 규정한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였다.

□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의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 우선,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https://www.safetruck.go.kr)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신고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전문 상담인력 1→ 3명 이상)하고, 신고 접수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또한,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운영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되어 다수 업종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 정부는 **제도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2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한다.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 · 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화물차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열람 · 검토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부과 · 징수한다.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 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